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9.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6월 12일, 윤건영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6년 7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38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전체회의(2026. 8. 24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

소위원회

제438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6. 8. 26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원

안가결)

제439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행정안전위원회(2026.9.1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축조심사, 찬

반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윤건영의원)

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,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등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생 략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이해식)

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, 원안의결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쳤음.

[붙임]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광역시”를 “통합특별시·광역시”로, “도”를 “특별자치시·도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시·도비 기준보조율)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, 경비의 종목,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,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.	제4조(시·도비 기준보조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~~통합특별~~ <u>시·광역시</u> -- <u>특별자치시·도</u> 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) ① · ② (생 략)	제11조(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·군·자치구의 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적은 서류를 특별시장·<u>광역시</u> <u>장</u>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 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 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④ · ⑤ (생략)	-----<u>통합특</u> <u>별시장·광역시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